

윤리규정

주식회사 네패스

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네패스(이하 '회사')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임직원들이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노동인원을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및 회사의 구성원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회사와 모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3조 (윤리강령)

임직원은 고객, 동료, 협력업체, 경쟁자, 정부 및 사회단체들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직업적·개인적 윤리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인원을 존중하며, 노동인권을 포함한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취하기로 한다.

임직원은,

-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 업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각자의 권리와 품위를 존중하고,
-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 회사와 다른 임직원의 명예에 손실이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모범이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행동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켜 나간다.

제3장 윤리규정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의 인권보호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 고객만족 경영

- 가.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한다.
 - 나. 고객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2.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 가.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제공한다.
 - 나.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3. 고객 보호
- 가. 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나.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제5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업무에 임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의 만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1. 주주 투자수익 보호
 - 가.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2. 상호신뢰
 - 가.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 나.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6조 (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건강하고 윤리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1. 임직원 존중
 - 가.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각각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나.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다.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생리학적, 심리학적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라.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마.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다한다.
2. 공정한 대우
 - 가.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인종, 피부색, 결혼여부, 언어, 민족, 사회적 지위, 장애, 재산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나.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 촉진
 - 가. 회사는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나. 회사는 임직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 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4. 사명의 완수
 - 가. 회사와 임직원은 공명정대하고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임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다.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5. 안전 및 위험 예방
 - 가. 회사는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나.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작업장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다.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직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7조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존중하고 협업하여 건강한 근무 기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1. 임직원의 기본윤리
 - 가. 임직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나.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다.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제반 법률, 사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윤리적 상황에 처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라.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반드시 '윤리지킴이' 또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사업부/본부/팀) 내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마. 관련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공정한 직무수행

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지적 재산을 유용·횡령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은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상사는 부하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3.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4. 임직원 상호 간의 윤리

가.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나.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금한다.

다. 임직원 상호 간 부당한 청탁, 알선, 금전거래 행위 및 개인적 금품수수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 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생일, 전배, 경조사 등) 내에서 가벼운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라.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상호 감독할 책임이 있다.

마.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바.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회사 재산의 보호

가. 임직원은 업무시간 및 회사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은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다. 임직원은 고객 및 사내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6. 회사의 보안유지

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자료 등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지적 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위험 예방

가. 임직원은 근무 관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임직원은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를 실시하고, 전력을 다해 다른 임직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8조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파트너로서 협력사를 존중하고 협업함으로써 협력사의 인권을 보고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1. 공정한 기회 제공

가.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나. 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제품 및 가격, 신뢰성 등을 기초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가.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협력사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지원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게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호 보완한다.

3. 상호 발전 추구

가.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부단한 혁신과 노력으로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나.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제9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은 회사가 Global Top Tier 기업으로서 윤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1. 국가에 대한 책임
 - 가. 회사는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 나.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 다.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정치활동 관여 금지
 - 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나.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되, 임직원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4. 친환경경영
 - 가. 회사와 임직원은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나.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성과를 개선한다.
 - 다.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 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4장 윤리경영의 실천

제10조 (윤리경영 전담부서)

- ① 회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윤리규정 실천 지침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의견 수렴

2.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
3. 기업윤리 실천 사례의 공유 및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
4. 비윤리제보시스템의 운영 (윤리지킴이의 지정 및 비윤리 제보사항의 조사 업무 포함)
5. 기타 회사 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비윤리행위의 신고의무)

- ① 회사의 임직원들은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윤리지킴이'에게 전화, 이메일,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보를 받은 '윤리지킴이'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신고한 임직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 중인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22년 07월 29일 부로 적용 · 실시한다.

2. 위임규정

본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규정 실천지침서'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3. 윤리규정의 활용

1. 윤리규정을 업무에 적용할 때 윤리규정과 윤리규정 실천지침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은 이전의 유사 규정과 중복될 경우 이에 우선한다.
3. 윤리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며, 회사 인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은 보장된다.

4.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서를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